

의
안
번
호

1290

【울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16. 11. 11(금)
- 나. 제출자 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다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6. 11. 16.(수)
- 라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6. 11. 29.(화)

2. 제안이유

- 『개인정보 보호법』 개정(2014. 8. 7)에 의거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2016. 1. 1.부터 전면 제한됨에 따라,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을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따르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
(안 별지 제1호 서식, 별지 제2호 서식)

4. 관련법령

-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4조의2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 조례안은

- 「개인정보보호법」 개정으로 법령상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2016. 1. 1부터 제한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을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따르고자 개정하는 것
- 2016. 8. 29부터 9. 19까지 입법예고 실시로 주민의견을 들었으며, 조례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는 이행하였으나,
 - 관련법이 2014. 8. 7 개정되어 2016. 1. 1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현재까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.

〈 관 계 법령 〉

□ 개인정보 보호법

제24조의2(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)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.

1.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
 2.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3.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
-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암호화 적용 대상 및 대상별 적용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와 유출 시 영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4.3.24., 2015.7.24.>
-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3.24.>
-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른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정비, 계획의 수립,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·지원할 수 있다.